

『 KEB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18.9.18 현재,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기본금리	5천만원 미만 0.1%, 5천만원 이상 0.2%														
우대금리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 합니다.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우대금리 자세한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수수료구분</th> <th rowspan="5">『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행 자동화기기 이용</td> <td>마감후 현금인출</td> <td rowspan="5">면제</td> </tr> <tr> <td>당,타행이체</td> </tr> <tr> <td>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td> <td>타행이체</td> </tr> <tr> <td colspan="2">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td> </tr> <tr> <td colspan="2">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td> </tr> </tbody> </table>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상품전환	X	불가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1588-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전날까지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 월의 제 3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 익일
--------------------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특징: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금여의 지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2018. 9.18 현재, 세전, 연)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금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계정 과목	저축예금													
입금 제한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이 제한됨. (예금주 본인의 입금도 제한됨.)													
기본 금리	저축예금 고시금리에 따름. (5천만원 미만 0.1%, 5천만원 이상 0.2%)													
우대 금리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 합니다.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 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수수료구분</th> <th rowspan="5">『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행 자동화기기 이용</td> <td>마감후 현금인출</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면제</td> </tr> <tr> <td>당,타행이체</td> </tr> <tr> <td>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td> <td>타행이체</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td> </tr> </tbody> </table>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부가 서비스	별칭 및 부기명 인자 서비스 (예시: 000 행복지킴이통장) 단, 글자수 제한 있음.													
거래 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 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이자계산기간</th> <th>이자결산일</th> <th>이자지급일(원가일)</th> </tr> </thead> <tbody> <tr> <td>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td> <td>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td> <td>결산일 익일</td> </tr> </tbody> </table>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세제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계약의 해지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휴면예금 편입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할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 휴면예금으로 간주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3

유의사항

-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합니다.

이 예금은 KEB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1111 (서비스코드: 예금상담 012)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